

2018년 인천항 인센티브 지급기준 세부자료

□ 선사 인센티브

- 공통 적용

- ◎ 인천항 항만시설사용료 미납업체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
- ◎ 인센티브 총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
- ◎ 인센티브 금액 확정 후 지급 관련, 필요 시 항목 및 기준 간 조정하여 사용 가능

- 제1기준 : 신규서비스 개설 선사 (참여선사 포함)

대 상	'18년 신설 서비스 참여 선사 및 전략 지역 항로 유지 선사									
세부기준	<p>- 운항 지역별 서비스당 지급 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-bottom: 10px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운항지역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지급총액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략 지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억원</td> <td>· 미주 및 유럽항로 서비스의 경우 신규 및 기존 노선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 지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억원</td> <td>· 각 서비스별 지급상한액의 비중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분할 지급 · (지역별 서비스당 지급상한액) : 원양항로 (인도·중동·아프리카대양주) 3억, 동남아, 러시아 2억, 중국, 일본 등 1억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운항지역	지급총액	비고	전략 지역	4억원	· 미주 및 유럽항로 서비스의 경우 신규 및 기존 노선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	기타 지역	3억원	· 각 서비스별 지급상한액의 비중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분할 지급 · (지역별 서비스당 지급상한액) : 원양항로 (인도·중동·아프리카대양주) 3억, 동남아, 러시아 2억, 중국, 일본 등 1억
	운항지역	지급총액	비고							
전략 지역	4억원	· 미주 및 유럽항로 서비스의 경우 신규 및 기존 노선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								
기타 지역	3억원	· 각 서비스별 지급상한액의 비중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분할 지급 · (지역별 서비스당 지급상한액) : 원양항로 (인도·중동·아프리카대양주) 3억, 동남아, 러시아 2억, 중국, 일본 등 1억								
<p>- 1년간 신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며, 연간 최소 2만TEU 이상 처리 시 인센티브 지급</p> <p>· 단, 호주·인도 항로의 경우 지리적, 교역량 특성을 감안, 1만 TEU 이상 처리 시 지급</p> <p>- Weekly 서비스 제공 노선에 한해 해당 서비스 개설 후 1년간 선사별 처리 실적의 점유율만큼 분할지급(선복임차 선사 포함)</p> <p>- 해당선사가 인천항에서 제공하지 않던 신규항로 서비스에 한해 신규 항로로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는 신규항로로 인정치 않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기존 기항지 중 50% 이내만 변경된 경우 항로조정으로 간주, 단, 운항지역이 변경, 혹은 추가되는 경우에는 신규항로로 인정 (예시) (인천~중국) → (인천~중국~동남아) or (인천~동남아) <p>- 기타 신규선대 인정이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단</p>										
예 산	7억원 (필요시 별도 추가 예산 책정)									

- 제2기준 : 물동량 증가 선사

대 상	'18년 2만TEU 이상 처리선사 중 전년대비 5% 이상 처리실적 증가선사 (적/공, 수출/수입/환적 전체 포함)
세부기준	- 5% 이상 증가선사 증가량 합계 중 선사별 증가실적의 점유율대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지급 * 2018년 인천시에서 인센티브 예산 지원 시 3억원을 추가 편성하고, 연간 2만 TEU 이상 처리 선사 중 전년 대비 10% 이상 물동량 증가를 기록한 선사에 한하여 증가량 합계 중 선사별 증가실적의 점유율대로 3억원 이내에서 지급
예 산	2억원

□ 화주 인센티브

◎ 인센티브 금액 확정 후 지급 관련, 필요 시 항목 및 기준 간 조정하여 사용 가능

- 제1기준 : 원양항로 활성화 기여 화주(일반화물)

대 상	전략 지역(미주·유럽) 또는 신규 원양 지역* 개설 직항을 통해 '적'컨테이너 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화주 * 원양지역 : 유럽, 아프리카, 미주, 대양주, 중동, 인도
세부기준	- (수입) 연간 100TEU이상 수입한 화주에 대하여 1TEU당 10천원 지급 - (수출) 연간 50TEU이상 수출한 화주에 대하여 1TEU당 15천원 지급 - 증빙 : B/L 상의 수출·수입 업체를 기준으로 지급
예 산	2억원 (추가 필요시 인천시 인센티브 배정 예산 사용)

- 제2기준 : 원양항로 활성화 기여 인센티브(냉동·냉장화물)

대 상	'18년 전략 지역(미주·유럽) 또는 신규 원양 지역 개설 직항을 통해 냉동·냉장 '적'컨테이너 화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화주 * 원양지역 : 유럽, 아프리카, 미주, 대양주, 중동, 인도
세부기준	- 냉동·냉장화물을 연간 10TEU이상 수출 또는 수입한 화주에 대하여 1TEU당 50천원 지급 - 증빙 : B/L 상의 수출·수입 업체를 기준으로 지급
예 산	1억원 (추가 필요시 인천시 인센티브 배정 예산 사용)

□ 포워더 인센티브

- 제1기준 : 수출 증가 포워더

대 상	'18년 인천항 이용 '컨' 수출실적이 전년대비 3,000ton 이상 증가 포워더 ('18년 신규 인천항 수출실적 3,000ton 이상 증가포워더 포함)
세부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천항 처리 물동량이 전년대비 3,000ton 이상 증가 포워더의 증가실적합계 중 포워더별 증가실적의 점유율대로 예산 이내에서 지급 - 업체별 지급상한액 : 3천만원 - 50만원 이하의 경우 지급치 아니함
예 산	1억원 (인천시 예산 배정시 3억원으로 증액)